

부산지방법원 2015. 9. 18 선고 2015가단23877 판결 [부속물매수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코리아서비스커뮤니케이션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5. 8. 28.

판결 선고 2015. 9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,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, 3호증, 을 제1 내지 3, 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
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부산 영도구 동삼동 1외 13필지상 한국해양대학교 해상안전훈련장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
한다)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국유의 행정재산이다.

나. 원고는 2007. 10. 9.경 관리청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
사용·수익허가를 받아(사용기간 만료로 2010. 10.경 사용기간 1년의 사용·수익허가를받았다가,
2011. 10.경 다시 사용기간 3년의 사용허가를 받았다), 이 사건 부동산 내사위장, 수영장, 헬스장,
순환운동실, 핫요가실, 에어로빅실 등에 시설설치공사를 한 다음,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다.
다.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사용기간이 2014. 10.경 만료되자,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은 더 이상
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사용·수익허가를 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
등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부동산 내 사위장, 수영장, 헬스장, 순환운동실, 핫요가실, 에어로 빅실 등에 공사비
9,700만 원 상당의 시설설치공사를 하였고, 그 가치가 현재 잔존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
공사비 상당액을 민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또는 민법
제626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국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주장과 같은
시설설치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,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
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
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
강박상 특허에 해당하여(대법원2006. 3. 9. 선고 2004다31074),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와

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626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[대법원2014. 12. 24. 선고 2012다115571(본소), 2012다115588(반소) 판결 참조]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(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사용·수익허가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, 달리 위와 같은 조건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추경준